



불법 “어린이완구” 버젓히 유통!

‘완구’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품목이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유통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중국·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불법 완구들의 유통으로 어린이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매업체들의 안전 인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어 대전시 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비롯하여 문구·완구 도매점을 대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합동점검반은 일부 매장에서 어린이들이 얼굴에 쓰는 가면이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가 없이 불법공산품(완구)으로 유통되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점검반은 판매업체의 대표자에게 “해당 제품은 어린이가 피부에 접촉하여 놀이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완구에 해당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제품의 경우에 인체유해물질인 카드





품등의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의 기준에 대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중국 및 동남아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불법공산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가 없는 불법 공산품(완구)에 해당이 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완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매금지 요청을 하고 해당 업체 및 제품에 대해서는 대전 광역시청에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되어있는 제품의 판매자에게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정상적인 제품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비교 설명하면서 “불법제품을 판매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며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필히 인증마크(KC 또는 KPS)를 확인하고 판매하기를 당부했다.

협회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제조자는 물론 유통업체도 이러한 유해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들도 제품구입시 안전한 제품인지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불법제품 확인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www.ksafety.kr) 및 세이프티코리아(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σ

